

# 공로연금 대상자 선정 내규

## 1. 자격 기준

가. 연 령: 만 72세 이상

나. 단 급: 9단 이상

## 2. 공적 평가 기준

| 평가등급  | 가(430점)  | 나(250점)   | 다(160점)   |
|-------|--|---|---|
| 선수 경력 |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(◆ 100점)  | 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(◆ 50점)  | 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 출전 또는 전국규모 국내대회 개인전 우승 경력이 있는 자(◆ 30점)  |
| 지도 경력 | ①유도지도자 또는 국제심판으로 20년 이상 활동한 자(◆ 50점)<br>②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국제대회(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)에서 입상 하도록 지도한 자(◆ 50점)  | ①유도지도자 또는 국내심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(◆ 30점)<br>②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국제대회에서 입상 하도록 지도한 자(◆ 30점)  | ①유도지도자 또는 국내심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(◆ 20점)<br>②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국내대회에서 입상 하도록 지도한 자(◆ 20점)   |
| 기여도   | ①본회 및 시도지부의 임원으로 30년 이상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(◆ 50점)<br>②유도발전기금을 1억원 이상 출연한 자(◆ 50점)<br>③세계선수권대회 단장으로 참여한 자(◆ 30점)<br>④유도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한 자(팀 창단 3회 이상 또는 전용 유도장 건립)(◆ 50점)<br>⑤유도를 통해서 체육훈장을 수여 받은 자(청룡장)(◆ 50점)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본회 및 시도지부의 임원으로 20년 이상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(◆ 30점)<br>②유도발전기금을 5천만원 이상 출연한 자(◆ 30점)<br>③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장으로 참여한 자(◆ 20점)<br>④유도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한 자(팀 창단 2회)(◆ 30점)<br>⑤유도를 통해서 체육훈장을 수여 받은 자(맹호장, 거상장)(◆ 30점) | ①본회 및 시도지부의 임원으로 10년 이상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(◆ 20점)<br>②유도발전기금을 2천만원 이상 출연한 자(◆ 20점)<br>③본회에서 파견한 각종국제대회 단장으로 참여한 자(◆ 10점)<br>④유도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한 자(팀 창단 1회)(◆ 20점)<br>⑤유도를 통해서 체육훈장을 수여 받은 자(백마장, 기린장, 포장)(◆ 20점) |
| 기타    | ◆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본회 회장이 공로연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한 자<br>◆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헌하지 않는 자는 공적 평가 점수가 높다 할지라도 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.<br>◆ 연금지급대상자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유도인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되거나, 본회의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. |   |   |

※ 공로연금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본회 고단자(1반) 승단 심의위원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.

상기 항목을 평가하여 종합 점수 '250점'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본회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, 매월 일정액의 공로연금을 지급한다.

# 대한 유도 회

[2015.6.29일 개정]